E - 16 - 2012

# 빌딩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 황 명환

o 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#### o 제·개정 경과

- 2009년 10월 KOSHA CODE 전기분야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 o 관련규격 및 자료

- KOSHA GUIDE E-106-2011(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)
- KOSHA GUIDE E-85-2011(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- Code of practice for distribution of electricity on construction and building sites, BS 7375: 1996, BSI
- Electrical safety on construction sites, GS24: 1995, HSE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 - -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
##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16 - 2012

##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- (1) 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 배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(2) 이 가이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(가)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설비
- (나)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력공구의 변환장치
- (다) 지하 광산용 전기설비

## 3. 정의

- (1)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건설현장(Site)"이란 빌딩의 신규 건설, 보수, 확장, 철거작업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행하는 작업장을 말한다.
- (나) "계통(System)"이란 단일 전원과 단일 전기설비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을 말한다.
- (다) "TN계통"이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, 전기기기의 접지는 전원측 접지극에 보호도체로 접속한 방식을 말한다.
- (라) "TN-C 계통"이란 계통의 모든 부분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이 하나의 전

E - 16 - 2012

선에 의해 통합 운전되는 계통을 말한다.

- (마) "TN-S 계통"이란 계통의 모든 부분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이 분리되어 운전되는 계통을 말한다.
- (바) "TN-C-S 계통"이란 계통의 일부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이 하나의 도체에 의하여 이용되고, 나머지 부분에서는 분리 이용되는 계통을 말한다.
- (사) "TT계통"이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계통의 한쪽은 직접 접지시키고, 기기의 보호접지는 이와는 별도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(아) "IT계통"이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시키 거나 한 점에서 임피던스접지 시키고,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 통접지한 방식을 말한다.
- (자) "저감저압(Reduced low voltage) 계통"이란 상전압이 63.5 V 이하이고, 선간전 압이 110 V 이하인 계통을 말한다.
- (차) "분리초저전압(Separated extra-low voltage) 계통"이란 단일 고장전류에 의해 감전위험이 없도록 전기적으로 대지와 다른 전력계통과 분리시켜 놓은 초저전 압 계통을 말한다.
- (카) "초저전압(Extra low voltage)"이란 교류전압 50 V 이하, 직류전압 120 V이하 의 전압을 말한다.
- (타) "2종 절연(Class II insulation)"이란 이중절연을 의미하며, 기초절연과 부가절연으로 구성된 절연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일반사항

(1) 전문가의 조언

빌딩 건설현장의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본 안전가이드는 일반적 사항만 다루고 있으므로,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전기설비의 상세사항은 전기기술자의 조언을 듣 는 것이 필요하다.

E - 16 - 2012

#### (2) 교류전원

본 안전가이드에서 언급하는 교류전원은 주파수가 60 Hz이고, 전압 및 전류의 크기는 실효치를 의미한다.

## 5. 전기공급자에게 사전통지

- (1) 빌딩건설을 고려할 때 전원을 전기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계획단계 이전에 이러한 계획을 전기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(가) 계약전력 5,000 kW 이상 10,000 kW 이하는 사용예정일 1년 전
  - (나) 계약전력 10,000 kW 초과 100,000 kW 이하는 사용예정일 2년 전
  - (다) 계약전력 100,000 kW 초과 300,000 kW 이하는 사용예정일 3년 전
  - (라) 계약전력 300,000 kW 초과는 사용예정일 4년 전
- (2) 건설 주계약자와 전기설비 설치자 간에도 가능한 빨리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(3) 전기공급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(가) 전원공급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
- (나) 빌딩건설에 필요한 최대 전력
- (다) 빌딩이 건설된 후의 최대 전력부하
- (4) 전기공급자의 전원이 다중접지방식인 경우 빌딩 전기설비의 접지방식은 「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」(KOSHA CODE E-9-2007)에 따라 전기설비 각각에 대해 접지하여야 한다.
- (5) 기존의 가공선로, 지중케이블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.

E - 16 - 2012

- (6)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공급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.
  - (가) 빌딩건설에 필요한 전력공급이 충분한 지, 아니면 예비전원이 무엇인지를 확인
  - (나) 최대사용 예정전력 공급가능 여부
  - (다) 전력계량과 요금체계의 확인
  - (라) 전력수전 예정시기
  - (마) 전원공급 계통의 상세내용(변전소, 주·예비전원 등)
  - (바) 전기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접지계통
- (사) 책임분계점 위치
- (아) 인입선의 가공, 지중 시공여부 및 적정규격 사용
- (자) 현장에 설치된 발전기의 상세내용

## 6. 전기재료

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배전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재료는 한국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 7.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

#### 7.1 계획단계

- (1) 건설현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건설현장의 요구사항과 전기공급자의 주의사항을 논리적으로 안전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- (3) 전기공급자는 안전하게 책임분계점을 확실히 구분하여, 설비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.

E - 16 - 2012

- (4) 전원 인입점에서의 단락전류와 지락전류에 대한 접지 요구사항을 특히 고려하여 야 한다.
- (5) 공급전원이 다중접지방식인 경우 모든 금속도체는 본딩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건설현장의 철 구조물이 너무 많아 모든 설비의 본딩이 어려운 경우, 이에 대한 적절한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공급자는 건설현장에 전원을 공급하면 안된다.
- (7)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퓨즈, 차단기 등에서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접지봉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(8) 전력계통에서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접지방법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.
- (9) 건설현장에서는 누설전류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고감도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하다.

#### 7.2 전기설비의 선정

- (1)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케이블 및 전기설비는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므로, 이 러한 특수 환경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 전선로의 보호, 접지의 적정배치, 주기적 점검 및 시험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.
- (3) 건설현장의 고정설비는 주 차단기반과 이의 보호장치에 한정된다.
- (4) 인입점에서의 계량기와 차단기반은 외부 충격과 열악한 환경에 대해 보호가 되어야 한다.
- (5) 모든 차단기반은 비상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, 건설자재

E - 16 - 2012

등에 의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.

- (6) 건설현장의 모든 선로는 반드시 전원이 "OFF" 위치에서 잠금기능이 있는 차단 장치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한다.
- (7) 전기설비는 비상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, 정격전류가 16 A 이하인 경우에는 플러그 및 소켓으로 된 전기접속장치도 가능하다.
- (8) 건설현장의 전기설비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.
  - (가) 전기부품의 단순 교체를 통하여 현장마다 다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현 장적용의 유연성
  - (나) 운송 및 보관의 적합성
  - (다)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함
  - (라) 사용상의 안전성
  - (마) 외부 환경에 대한 적합성
- (바) 보수의 편의성
- (9) 건설현장의 전기설비는 전기기술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,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10)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「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」(KOSHA CODE E-20-2004)를 참조하여 설치기준을 선정한다.

#### 7.3 전원공급계통

## 7.3.1 고압계통

(1)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배전전압이 22.9kV-y이므로 이 전기를 수전하여 고압이나 저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된다.

E - 16 - 2012

(2) 고압계통의 수변전 기기는 변압기, 콘덴서, 차단기, 고압배전반, 고압 및 특고압 개폐기 등으로 구성된다.

#### 7.3.2 저압계통

- (1) 선간전압이 380 V 이하, 상전압이 220 V 이하인 전원공급계통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(2) 건설현장의 전원공급방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인 전원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전기공급자로부터 가공선로 또는 지중케이블을 통한 전원공급방식
  - (나) 주변의 다른 건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
  - (다) 건설현장 전체의 전기설비 또는 일부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이용 한 전원공급방식
  - (라) 전동공구 또는 조명설비의 전원공급을 위한 이동형 또는 차량형 발전기를 이 용한 전원공급방식
- (3) 건설현장에서 고정형 또는 차량형 발전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원공급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, 동일 전원에 의해 공급받는 전력부하를 각각 파악하여야 한다.
- (4) 전기공급자의 전력계통과 현장 발전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통 연 결 이전에 전기공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#### 7.4 배전계통의 전압

#### (1) 주 전압

(가) 3상

빌딩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 전압은 3상 4선식 계통에서의 3상 380 V를 사용한다.

(나) 단상

빌딩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 전압은 단상 220 V를 사용한다.

E - 16 - 2012

#### (2) 저감저압

### (가) 저감저압 삼상

성형결선된 변압기의 2차측 중성선을 접지시킨 후, 2차측 상전압을 선간전압의  $1/\sqrt{3}$ 이 되도록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, 선간전압이 110 V이면 저감 저압인 상전압 63.5 V를 사용한다.

(나) 저감저압 단상

변압기의 2차측 중간탭을 접지시킨 후, 2차측 상전압을 선간전압의 1/2이 되도록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, 선간전압이 110 V이면 저감저압인 상전압 55 V를 사용하다.

#### (3) 분리 초저전압 단상 25 V 또는 50 V

- (가) 안전 절연변압기(Safety isolating transformer)로부터 분리 초저전압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, 동일 수준의 전기적 분리를 통한 전력공급원을 통해 초저전압을 인출하여 사용한다.
- (나) 분리 초저전압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로와 노출된 모든 금속도체는 대지와 다른 전력계통의 전선로 등과 전기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.

#### 7.5 배전선로의 전기적 보호

#### 7.5.1 일반사항

- (1) 건설 후의 최종 선로를 포함한 모든 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전기보호장치가 과부하,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 등에 대해 설치되어야 한다.
- (2) 보호장치는 고장전류에 대해 전력설비의 손상없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7.5.2 구별

선로보호용 퓨즈 또는 차단기의 용량은 다른 선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운전상 구별이 되도록 하는 전기적 상호협조, 즉 보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.

E - 16 - 2012

#### 7.5.3 낙뢰보호

빌딩 건설현장에서는 낙뢰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.

#### 7.5.4 접지

#### (1) 일반사항

- (가) 접지를 통한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.
  - ① 짧은 시간동안 전기장치에 흐르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궤환회로 의 임피던스가 충분히 작도록 하며, 이는 일반적으로전기공급자가 제공하는 TN계통이 사용된다.
  - ② 다른 보호방식은 사용자가 접지계통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원 인입측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TT계통이 사용된다.
- (나) 인입케이블의 지락사고로 건설현장 내 금속외함의 전압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외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
- (다) 지락사고로 인한 위험감소를 위하여, 금속외함과 인입 전선간에는 2등급 절연 자재 이상의 절연 패킹, 패킹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다중접지계통에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TN-C-S 계통이 연결될 경우 전력계통 주변의 모든 금속도체는 함께 본딩시켜야 한다.
- (마)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이를 즉시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의 접지저항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바) 다중접지계통에 전원을 연결하는 경우 건설현장 내의 모든 금속도체를 본딩시켜 야 하는 TN-C-S 계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실용적이다.

#### (2) 이동형 저압 단상발전기

- (가) 일반적으로 정격용량은 0.3 kVA 내지 10 kVA 정도이다.
- (나) 발전기 권선은 일반적으로 본체와는 격리되어 있고, 3구 소켓을 통해 인출된다.
- (다) 보호접지도체는 발전기 내부에서 본체와 연결되어 있다.
- (라) 전압선택스위치가 220 V 또는 110 V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발전기는 저감

#### E - 16 - 2012

전압을 이용할 수 없으며, 접지용 중간 탭을 갖는 110 V 발전기에서는 저감전 압을 얻을 수 있다.

- (마) 소형 단상 발전기는 권선을 접지시키지 않고 부동(Floating)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, 이는 수 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.
- (바) 발전기의 케이블, 플러그 및 소켓은 수시 검사하여야 하고, 만약 손상된 경우에는 보수할 것이 아니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사) 소형 단상 발전기의 공급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110 V 또는 가정용 220 V 의 휴대용 전기기구는 이중 절연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아)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설비가 접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T계통으로 간주되어야 하고, 이 계통에 대하여는 절연감시체계가 필요하다.
- (자) 대형발전기 또는 건설기간동안 계속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는 저감저압을 얻을 수 있도록 권선 중앙에 접지 탭을 갖는 110 V용이거나,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차) 건설현장의 발전기와 전기공급자의 전력계통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계되는 경 우 접지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(3) 주 전압 380/220 V 삼상전원

- (가) 전원공급계통과 연결되는 주 접지선은 일반적으로 전기공급자에 의해 제공된다.
- (나) 고장전류의 시작 및 종점이 되는 다음의 부분이 보호장치가 0.2초 이내에 동작 하도록 충분히 작은 대지궤환경로 임피던스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① 보호도체
  - ② 접지단자 및 접지도체
  - ③ 케이블의 금속시스 및 가공지선 등의 금속궤환경로 또는 금속 궤환경로가 없을 경우의 대지궤환경로
  - ④ 변압기 권선과 중성선을 통한 경로
  - ⑤ 상도체

#### (4) 저감저압

(가) 저감저압 회로에서 보호장치의 동작은 저감저압용 변압기의 궤환회로로 사용되는 금속도체의 설치 여부에 의존한다.

#### E - 16 - 2012

- (나) 궤환회로로 사용되는 금속도체는 별도의 회로로 구성된 독립 보호도체이거나, 케이블을 보호하는 금속도체를 이용한다.
- (다) 과전류 보호장치는 전력계통이 고장전류에 대한 열적, 기계적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시간 이내에 고장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.
- (라) 과전류 보호장치는 모든 상도체에 대하여 설치하고, 차단시 모든 상을 동시에 차단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#### 7.5.5 접지 보호도체와 접지시스템의 감시계통

## (1) 일반사항

- (가) 이동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유연케이블의 경우 안전을 위한 접지궤환회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(나) 케이블에 내장된 보호도체가 손상되거나 끊어진 경우 고장전류가 흐를 경우 더 이상 궤환회로를 형성하지 못하여 안전하지 못하다.
- (다) 궤환회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보호도체의 감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.

#### (2) 접지 보호도체의 확인

- (가) 접지보호도체의 검증시스템(Protective conductor proving system)은 검증설비와 먼 거리에 있는 보호설비의 보호도체 연속성을 확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.
- (나) 검증방식은 임피던스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, 특수계전기를 사용하여 보호도체의 연속성을 개략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.
- (다) 검증설비는 보호도체의 시작점과 보호할 설비간의 어느 지점에서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(라) 검증설비에는 유도도체(Pilot conductor)와 보호도체간의 단락을 감지하기 위한 직류계전기가 사용될 수 있다.
- (마) 검증설비는 보호도체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로에 대한 전압감지장치 또는 직렬로 연결된 전류감지장치를 이용하며, 어떤 경우이던 접지 궤환회로의 임피던스는 매우 작아야 한다.
- (바) 전원측 및 감지부분의 임피던스의 합 Z<sub>1</sub>은 <그림 1>과 같이 유도도체 회로와

### E - 16 - 2012

직렬상태로 나타난다.

- (사) 감시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 $Z_1$ 과 나머지 루프의 임피던스  $Z_2$ 의 합으로 나타난 다.  $Z_2$ 의 값이 약  $10\Omega$ 을 초과하면 부하측 설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.
- (아) 전기설비의 운전 후 감시루프가 개방되었거나, 임피던스가 20Ω 이상으로 증가 한 경우 전기설비는 감시설비와 전기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. 제시된 수치는 예시이므로 실제 값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.
- (자) 검증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보호도체와 설비외함, 대지궤환회로를 포함한 루프 회로에 흐르는 전류이다.
- (차) 플러그 및 소켓, 케이블 등의 설치가 보호도체뿐만 아니라 유도도체라고 알려 진 궤환회로에 대하여도 제공되어야 한다.
- (카) 검증설비 자체에도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타) 접지회로에 설비외함이 포함된 것은 설비외함에 두개의 독립적인 접지단자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, 접지단자가 없을 경우 감시기간 중 설비외함이 활선도 체로 변할 수 있다.
- (파) 보호도체와 유도도체가 직렬상태로 연결되어서 감시하고 있더라도, 지락전류가 흐를 경우 가능한 한 병렬회로로 분산 작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(3) 접지시스템의 감시계통

- (가) 접지 감시계통은 감시장치와 원격 설비간의 보호도체 임피던스 값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다.
- (나) 감시장치는 발전기, 변압기 등의 에너지원과 보호설비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(다) 접지감시는 12 V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 초저전압 전원에서 인출된 순환전류에 의해 수행된다.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원이 공급된 보호 전기설비의 접지선로가 단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.
- (라) 감시전류는 궤환회로의 일부분인 보호장비의 보호도체 및 장비외함을 따라 흐른다.
- (마) 보호도체 경로와 시험도체로 알려진 궤환경로에 대해 플러그 및 소켓, 유연케이블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바) 보호도체 경로와 시험도체 경로는 직렬상태에서 감시가 되지만,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능상 병렬로 작용하게 되며, 감시장치는 접지를 시켜야 한다.

E - 16 - 2012

## 7.6 전기 접속기구

(1) 플러그 및 소켓, 접속기구 등의 색상을 전압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 <표 1>에서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전압별 색상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.

사용전 압(V)	색상
25	보라
50	백색
110~130	황색
220~240	청색
380~415	적색
500~650	흑색

<표 1> 플러그 및 소켓의 전압별 색상

(2) 정격전류가 32A를 초과하는 플러그 및 소켓, 케이블 접속기구 등은 부하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연동시켜야 한다.

#### 7.7 케이블

#### (1) 일반사항

- (가) 정상상태에서 자주 이동하는 케이블은 유연 케이블을 사용한다.
- (나) 이동용 배선의 말단은 단자 연결시 뒤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.
- (다)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상도체의 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.

#### (2) 고정 케이블 및 전선

- (가)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63.5 V를 초과하는 케이블은 효과적으로 접지를 시키기 위하여 금속 외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유연케이블 또는 이동형 케이블의 경우에는 금속외장을 보호도체로 사용하여 서는 안 되며, 케이블 내에 접지용 단심을 추가하여야 한다.

E - 16 - 2012

(다) 사용전압이 12 V를 초과하고 63.5 V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형 또는 열 저항 탄 성중합체로 절연된 외장 케이블을 사용한다.

#### (3) 유연성 코드 및 케이블

- (가) 유연성 코드의 도체 단면적은 최소 1.5 mm<sup>2</sup> 이상이어야 하며, 부속품 또는 다른 장비와 연결하는 경우 말단처리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나) 유연성 코드 및 케이블의 전류정격은 연결 장비의 정격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, 저감저압계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, 물, 기름,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거친 고 무 또는 PVC로 된 외장을 갖추어야 한다.
- (다) 케이블 절연재는 저온에서 유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최저온도에 적 합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라) 일반용 PVC 절연케이블을 유연케이블 또는 코드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## (4) 건설현장의 매설케이블

- (가) 공사현장의 임시케이블 또는 영구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지하매설 케이블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케이블의 위치와 설치경로는 지상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하고, 지도 또는 공 사계획에 기록하여야 한다.

## 8. 현장작업

현장작업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『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5편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을 참고한다.

#### 8.1 일반사항

(1)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차단장치는 TT계통에서 차단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상도체를 동시에 분

E - 16 - 2012

리시킬 수 있는 다극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(2) 플러그와 소켓 등의 접속기구, 케이블 결합장치와 같은 차단장치는 전력공급선이 활선일 경우 "OFF" 위치에서 안전하게 설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 잠금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(3) 스위치 잠금장치는 특수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.
- (4) 소켓은 정격전압 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전압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5) 내열 탄성체를 눌러 핀의 접촉을 통해 연결되는 전구소켓은 소켓 접속부가 절연 재질로 덮였거나, 몰딩처리 되었거나, 케이블 외장과 본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. 사용되지 않는 전구소켓은 캡으로 뒤집어 씌워야 한다.
- (6) 32 A를 초과하는 중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소켓은 플러그를 제거하기 전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기계·전기적으로 연동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건설현장 배전계통에 사용되는 소켓 접속장치는 어느 현장에서든 쉽게 설치하여 연결되도록 설계·제작하여야 하며, 현장의 공정진행 상태에 따라 전기설비를 쉽게 연결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.
- (8) 케이블은 건설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로, 보도, 사다리, 계단 등과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며, 증기, 가스, 물 배관 등과 최소한 150 mm 이상을 이격시켜야 한다.
- (9)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은 최소 0.6 m 이하에 설치된 덕트를 통해 설치되어야 하며, 도로가 교차하는 끝 부분에 케이블의 위치르 표시하여야 한다.
- (10) 전기공사작업을 시작하기 전 전원을 차단하는 플러그, 소켓 및 케이블 접속기구 이외의 차단장치에는 열쇠나 특별한 기구에 의해서만 잠금(OFF) 상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E - 16 - 2012

- (11) 전원차단장치의 부하측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전로에 전압이 존재하지 않는 정전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
- (12) 일반적인 건설현장 조건을 고려할 때, 개폐기는 방수형이어야 하며, 소켓 및 케이블 접속기구는 방우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(13) 건설현장에서 케이블 접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지지대를 사용하여 대지와 이격 시켜 설치하여야 한다.
- (14) 신축 현장에 전기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전기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, 주변 건설자재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(15) 전기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전기사고와 설비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16) 통로와 계단에 설치된 비상등 및 피난등의 전원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독립된 변압기로부터 인출하여야 한다.

#### 8.2 가공전선

- (1) 전기공급자의 가공전선이 건설현장 위 또는 주변을 지나가는 경우 건설업자는 전력공급업체와 사전 주의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공급자와의 협의는 현장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건설계획 초기단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.
- (3) 건설현장에서 가공 케이블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크레인 및 건설기기의 이동을 위해 도로 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6.0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자동차, 건설기기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가공 케이블에는 최소

E - 16 - 2012

한 6.0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,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확연히 구분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(5) 주변 환경에 따라 출입제한을 위한 방벽을 설치하여도 된다.

#### 8.3 지중케이블

- (1)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 또는 현장 주변에 지중 케이블이 있는 지 조사하여야 하며, 이 조사에는 현장 소유자, 현장 개발자, 지자체, 전력회사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(2) 지중케이블의 위치는 확인하여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(3) 지중케이블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배전계통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여이에 의한 전기적 위험을 없애기 위한 주의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.

#### 8.4 안전작업

- (1) 빌딩 건설현장에는 전기설비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 이외에도 수시로 변하는 작업현장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2)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은 "OFF" 위치에서 스위치를 잠글 수 있는 격리스위치를 사용하는 등 설계 및 구매단계에서 최소화시켜야 한다.
- (3) 임시 전기설비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전원으로부터 플러그를 직접 뽑을 수 없는 형태로 하고, 전기설비에 연결되는 플러그는 작업자가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작업위치에 두도록 한다.
- (4) 영구 배전선로와 이에 연결되는 임시 배전선로에는 선로명을 표기하여야 하며, 배전선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선로명으로 즉시 고쳐야 한다.
- (5) 선로명을 기입하는 경우 동일한 명칭의 설비가 많으면 설비 각각에 대하여 고유

E - 16 - 2012

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편리하다.

- (6)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즉각적인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, 작업자가 감전 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관련 전원플러그를 뽑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.
- (7) 감전시의 응급조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, 전기작업자는 이에 관한 사전 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(8) 응급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, 전기작업을 위한 전기기술 자와 작업동료에 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9) 모든 작업자는 동료작업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. 또한 작업자는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10) 대규모 또는 복잡한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이의 제어, 운영, 보수 등에 대하여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, 공식 안전절차인 안전작업허가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
#### 8.5 철거작업

- (1) 철거작업의 계획단계에서 전원공급 위치를 확인하고, 철거작업 전에 모든 전원을 차단한 후 유자격자에 의한 정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철거작업의 계획단계에서 가공전선과 지중케이블을 재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유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
- (3) 철거작업에 필요한 전원의 공급은 철거지역 내의 전원과는 독립적인 전기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E - 16 - 2012

## 9. 현장 밖에서의 작업

- (1) 건설현장에는 전기설비를 보관할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, 전기설비를 설치, 보수, 교체 등을 위한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.
- (2)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을 시작하기 전, 현장내외에서 사용할 대형 전기설비의 이동상황을 나타내는 일정표에 대해 건설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건설현장 사무실, 건설장비, 일반적 조명설비 등과 관련된 도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가) 보호용 제어반의 정격 및 형식
- (나) 설치가능한 배전설비의 위치
- (다) 배전선로의 배치
- (라) 전력요금 체계와 최대 전력수요

## 10. 점검 및 검사

건설현장의 모든 전기설비는 사용하기 전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기록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.

## 11. 보수

#### 11.1 일반사항

- (1) 건설현장의 작업은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 또는 오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.
- (2) 전기작업자로 하여금 운전설비 및 배전선로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하

E - 16 - 2012

는 것은 안전과 운전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.

- (3)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기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, 현장 여건에 따라 검사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.
- (4) 시험은 보호도체의 성능유지와 절연에 대하여 수행하고, 이는 노후화 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
- (5) 이동설비에 대한 검사주기는 고정설비보다 좀 더 자주 시행되어야 하며, 검사주 기는 설비의 원래 설계조건과 실제 적용되는 현장여건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6) 전기설비의 설치 초기에는 유자격자에 의한 검사를 매주 실행할 것이 권장된다. 전기시험은 접지 및 절연상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, 시험주기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가감하여야 한다.
- (7) 정비주기는 건설공정과 현장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.
- (8) 검사내용은 플러그, 접속기, 부속품 및 이동형 장비에 유연 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검사도 포함하여야 하고, 철판덮개, 연동문, 기타 보호장치와 간섭이 발생하는 유연케이블의 상태도 검사하여야 한다.
- (9)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사용하여 최소한 월1회 이상 정상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.
- (10) H 변대주 위의 나무로 된 바닥재는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점검시 사고위험 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(11) 작업장 또는 점검장소의 출입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구획로프 설치 또는 "출입금지"표지를 부착한다.
- (12)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공급자가 조작하도록

E - 16 - 2012

하여야 한다.

- (13) 고압 또는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고압 60 cm, 특고압 90 cm 이상의 안 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14) 고압이상 설비에 대한 작업시는 전로의 개방을 확인한 후에 단락접지용구로 전로를 단락접지시켜야 한다.

## 11.2 검사기록

- (1) 빌딩 건설현장의 모든 전기설비에는 기기번호를 정하고, 기기의 설치일, 마지막 검사일 및 다음 검사예정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(2) 검사기록은 전기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건설현장에 보존하여야 한다.